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4. 11. 21.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50호로 2024년 11월 8일 최인순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기존 조례의 아동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조례가 별도 제정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조 ~ 안 제4조)

다.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안 제8조)

마. 간사, 지원사업, 협력체계의구축(안 제9조 ~ 안 제11조)

바. 비밀의준수, 실비보상, 시행규칙(안 제12조 ~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11.11.~2024.11.16.) 결과: 의견 없음

※ 부서 의견(보육지원과) - 참고자료

1. 제6조제3항제6호가 제6조제3항제5호와 내용이 유사.
2. 제13조 제목 등 조문이 적합한 용어로 수정 필요.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아동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별도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2023.7.6.)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12.24.)의 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여성폭력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책무를 규정한 바,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는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2조에서는 법 제17조¹⁾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1)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4)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검토결과

- 여성가족부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수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성폭력 사안의 민감성과 그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불확실한 안전망에 대한 불안감 등을 피해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여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되어 해당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2)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상담소등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해당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여성폭력 등 방지를 위한 근거를 규정함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됨.

□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수요 (2022년)**

필요 정책 (1순위~3순위, 3개 문항 응답 가능)	응답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42.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5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33.9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33.6
TV 공익광고, SNS 등을 활용한 성폭력방지 캠페인 및 홍보	27.1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21.7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20.0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전사회적인 인식 개선	18.6
시민 대상 성 인권 및 폭력 감수성 교육 확대	16.9
수사, 재판 기관의 성인지 관점 강화	15.5
수사기관 내 성폭력 전문 전담인력의 확충	10.9

- 안 제4조의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은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구체화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 시행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어 선순환 구조 체계의 확립 방안이라고 판단됨.

-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안 제4조의 시행계획 등의 평가와 폭력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방안, 여성안전 확보 등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활동,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피해자 의료비 및 자립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2차 피해방지 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자문하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원을 성별을 고려한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토대를 마련함.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아래 통계5)와 같이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안전망을 촘촘히 한 규정으로 우리 구 현행 사업으로는 지역 내 CCTV와 자치구 관제센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안심이 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을 조성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한편, 여성 및 청소년 안전 귀가 지원을 위해 여성 안전 취약지역을 순찰 등을 실시 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야시간 우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5) 여성가족부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폭력실태조사」 통계 자료

안심마을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음. 이 밖에도 위급상황 발생시 근처 편의점으로 대피 및 안전귀가를 지원하는 안심지킴이집, 안심택배함, 안심장비 지원사업⁶⁾, 불법 촬영장비 탐지기 대여 등의 사업을 통해 여성 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있지만 본 조례를 통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가장 필요한 도움 (2021년)

피해자가 원하는 도움 (1순위~2순위)	1순위	2순위
	응답률(%)	응답률(%)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접근금지 등)	70.5	13.9
심리·정서적 지원	9.4	32.5
수사·법률 지원	11.3	25.6
의료적 지원	2.3	6.5
주거 지원 (쉼터 및 임시숙소 연계, 임대주택 지원 등)	4.8	13.6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0.4	2.8
현금 지원	0.7	2.1
온라인상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댓글 등에 대한 삭제지원	0.7	3.0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기존 조례에서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에 따른 여성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안심홈세트 3종(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현관문 안전장치) 스토킹 피해자 대상 2종(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디지털 도어록) 추가 지원

※ 여성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 설 명	주요사업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다시함께상담센터 열린터 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 직업훈련(네일아트 자격취득과정) ○ 아웃리치(현장방문활동)
	자활지원센터 넝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교육 : 미용학원, k핸드메이드페어 등 ○ 자체교육 : 신규스텝 오리엔테이션, 개별교육(자기소개서), 집단교육(노동법), 진로탐색교육,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천연염색 기본·심화교육
	십대여성인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 상담치료, 심리정서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 아웃리치, 홍보 및 성매매예방교육
	라우라의집 그룹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사업 : 주거공간제공 ○ 적성에 맞는 취업을 위한 개별 학습지도 지원 ○ 내부프로그램 : 생활상담, 문화활동, 캠프, 월 가족모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소	꿈터 성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상담 ○ 의료, 법률 지원 ○ 교육사업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관련 상담 ○ 의료, 법률 지원 ○ 기관연계, 정보제공
	한국가정법률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상담 ○ 의료, 법률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꿈터가정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상담
한부모 가족 시설	바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생활시설 ○ 입소자 상담치료 ○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참고 자료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p>6. 그 밖에 <u>여성폭력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u></p>	<p>6. 그 밖에 <u>여성폭력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 자</u></p>	<p>제6조 3항 5호와 내용이 유사하여 수정</p>
<p>제13조(<u>실비보상</u>) ----- <u>성폭력 등 피해방지</u>와 피해자 보호·지원 --- ----- ----- ----- ----- ----- ----- ----- ----- ----- -----</p>	<p>제13조(<u>수당 등</u>) ---- -- <u>여성폭력 등 방지</u> 와 피해자 보호·지 원 ----- ----- ----- ----- ----- ----- ----- ----- ----- -----</p>	<p>‘실비보상’은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의미로 특정 경비를 청구할 때 적합한 용어로,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회의 출석 자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수정</p>